

- ◆ 25.6.23.일부 시행되는 철강 파생상품에 8개 가전 품목군 추가 조치에 관한 美 연방관보 공고문(6.16.)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사항을 적색표기하여 우리기업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1. 미국의 철강 ·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발표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철강·알루미늄 및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관세 관련 미측 발표는 美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ederalregister.gov/presidential-documents/proclamations](https://www.federalregister.gov/presidential-documents/proclamations)



FEDERAL REGISTER
Reader Aids :: Insight Into the FR Ecosystem



☆☆ Proclamations

Proclamations

[view all Presidential Document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mmunicates information on holidays, commemorations, special observances, trade, and policy through Proclamations. After the President signs a Proclamation, the White House sends it to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OFR).

The OFR numbers each proclamation consecutively as part of a series and publishes it in the daily Federal Register shortly after receipt.

This page contains document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Because the White House cannot deliver a document to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OFR) until after the President signs a document, there is always a delay (of at least one day, typically of several days) between when the President signs a document and when it is published. Once received, OFR gives presidential documents priority processing and documents will appear on public inspection the business day before publication. If you are looking for a recently-signed Presidential document, you may wish to check the White House [website](#).

Proclamations signed since 1994 are available as a single bulk download and as a bulk download by President, or you can browse by President and year from the list below. More details about our APIs and other developer tools can be found on our [developer pages](#).

Donald J. Trump	CSV/Excel	JSON
Joseph R. Biden, Jr.	CSV/Excel	JSON
Donald J. Trump	CSV/Excel	JSON
Barack Obama	CSV/Excel	JSON
George W. Bush	CSV/Excel	JSON
William J. Clinton	CSV/Excel	JSON
All Proclamations Since 1994	CSV/Excel	JSON

-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은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9704('18.3.15.), 9705('18.3.15.), 9980('20.1.29.), 10895('25.2.18), 10896('25.2.18.)에 미국 기준 HS 코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고령 주요 내용 요약 >

포고령	품목	추가 관세율 및 부과 시기
9704	알루미늄	10%('18) → 25%('25.3.12.) → 50%('25.6.4.)
9705	철강	25%('18) → 25%('25.3.12.)* → 50%('25.6.4.)
9980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 25% 알루미늄 10%('20) → 25%('25.3.12.) → 50%('25.6.4.)
1089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25.3.12.) → 50%('25.6.4.)
10896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25%('25.3.12.) → 50%('25.6.4.)
10947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0%('25.6.4.)

* '18년 철강은 쿼터를 두어 쿼터 내 수입량에 대해서는 추가관세 부과 없이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5.3.12일부로 쿼터 폐지

- 지난 6.3일 공개된 포고령에 따라 추가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되고, 일부 품목에는 232조 관세와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美 동부시간 6.4일 00시 1분 통관분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4~6번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홈페이지에도 추가 관세 부과대상 품목 리스트를 게재하였으니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이나 부분품이면 모두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 수출하려는 제품이 포고령(Proclamation)에 명시된 미국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 또는 부분품이더라도 포고령에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관세 부과 대상 파생상품 목록에 제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HS CODE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는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 HS 코드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고, 7자리 이하는 각국 재량으로 세분화됩니다.
-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하려는 제품의 국내 HS 코드(HSK) 6자리를 hts.usitc.gov에 입력하여 미국의 세부 HS 코드(HTS) 중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S는 최대 10자리로 분류됩니다.
- 우리 관세청은 기업 편의를 위해 파생상품 목록에 포함된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동 자료를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상술한 것과 같이 제품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HS 코드 6자리 이하 세부 분류 체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기 전 미국 내 수입자 또는 CBP(美 관세국경보호청)를 통해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S CODE 및 원산지 사전심사(eruleings.cbp.gov/s/)>

The screenshot shows th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page. It includes a header with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ogo and the titl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Below the header, there is a welcome message and instructions for users. A 'Request Application' button is visible. At the bottom,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Travel', 'Trade', 'Border Security', 'Newsroom', 'About CBP', 'Careers', and 'Employee Resources', along with social media icons and a 'Contact CBP' link.

The screenshot shows the 'Ruling Requester Information' form. It is a multi-step process with 6 steps: 1. Requester Information, 2. Type, 3. Questions, 4. Description, 5. Attachments, and 6. Submit. The 'Requester Information' step is currently active. The form fields include:

- *First Name (with Middle Name/initial)
- *Last Name (with Title)
- *Company Name
- *Address 1 (with Address 2)
- *City (with *State, *Zip/Postal Code, and *Country)
- *Phone (with *Email Address and *Retype Email Address)

 A 'Next'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form.

4.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 관세는 기본관세, 양허관세, 탄력관세, 잠정관세로 구분됩니다. 세율은 HS 코드별로 상이하며, HS 코드별 기본세율뿐 아니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여러 종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기본세율 또는 FTA 양허세율(둘 중 낮은 세율 적용) + 상계 관세율 + 반덤핑 관세율 + 301조 관세율 + IEEPA 관세율 + 상호 관세
-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라면 해당 관세가 추가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50% 추가 관세를, 자동차(4.3일부) 및 자동차부품(5.3일부)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철강제품(HS 73류), 알루미늄제품(HS 76류)의 경우 ①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부과되고 ②그 외 부분(미함유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구 분	적용 관세
한국산 수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세율 또는 FTA 세율 중 낮은 세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상호관세(현재 10% → 7.9일부 25%) • 232조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에 포함시 50% 관세 추가 * 철강(73류), 알루미늄(76류),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 미국 기본 및 양허세율 : hts.usitc.gov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https://access.trade.gov/ADCVD_Search.aspx

5.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나요?

- 기존 포고령에서 추가 관세 대상 품목으로 명시된 세번이라면(美 HTS 기준) 50%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품 내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 원자재 기반 관세(Duty based on Material or Content)는 수입된 제품의 재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관세 부과 대상 원자재 중량의 가격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6.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할 경우,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25.6.4일부 변동사항)
- * (기존, 3.12~6.3) 철강·알루미늄 함량(가격기준)에 25% 관세 (나머지 부분 관세 미부과)
→(변경, 6.4~) ①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 관세 + ②나머지 부분에 상호관세 적용

(예) 철강 파생상품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둘다 포함된 경우,
철강 함량 10%, 알루미늄 함량 5% 제품의 경우 15% 부분에 50% 관세 적용, 나머지 85%에 상호관세 적용

7. 철강·알루미늄 포고령 양쪽에 포함된 파생제품에는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 일부 파생제품은 철강 포고령 및 알루미늄 포고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격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 50% 관세를, 그 외 미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인상된 50% 추가 관세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관세율 적용일은 선적일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 '25년 6월 4일 00시 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됩니다.
- 관세율 적용일 기준은 통관일(수입신고+상품도착) 기준입니다.
→ 선적이 6월 4일 0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완료되어 이미 항해 중인 물품이더라도, 미국 내 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9. 8.1 이후 상호관세 적용시 상호관세 적용일은 선적일 기준인가요, 통관일 기준인가요?

- 美 관세법상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은 '수입신고' + '상품도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의 관세율 부과가 원칙입니다.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입항전 수입신고 포함)의 관세율이 적용
- 단, 4월 5일부 시행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4.2.발표)에서는 현행 美 관세법의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선적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CBP의 CSMS #65201773(5.30) 추가공고를 통해 수입신고가 6.15일*까지 완료되는 물품에 한해 상호관세 부과 예외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6월 16일 12:01am 이전
- 또한, 4월 9일자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유예 발표 행정명령에는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CBP의 세부 가이드라인도 발표되지 않아, 한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美 동부시간 8월 1일 00:01 이후 도착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일(수입신고+상품도착) 기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6.4 이전에 통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상호 관세 등)를 과오납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철강·알루미늄 비함량분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 착오 등 과오납 관세의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 단, 철강 및 알루미늄 함유량 허위 신고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환급 불가능합니다. 특히, 함량 허위기재(함량 축소신고)시 과징금 부과 및 수입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과오납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美 관세환급(refund)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①drawback(드로우백)* ②PSC (Post Summary Correction) ③이의신청(Protest)이 있습니다.
 - * 특정 조건(수입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일부 관세 및 세금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 단,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drawback(드로우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세 납부 전의 경우, 미 통관 시스템인 ACE를 통해 통관 서류 (Entry Summary)상 관세를 수정할수 있습니다.
- 관세 납부 이후, 최종 정산(liquidation) 전의 경우, ACE에서 수입신고 사후 정정 절차인 PSC를 통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 대리인*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 * 인코텀즈 DDP(Delivered Duty Paid) 수출계약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정정의 주체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통관업체를 통해 수정 가능
- 최종 정산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CBP Form 19 양식과 함께 이의신청*(Protest)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자가 직접 이의신청 제출을 할수 있으나, 관련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직접 신청보다는 통상 로펌 또는 전문관세사를 통해 환급 신청

- 단, 오류 신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증빙문서 제시가 필수적이며, 개별 사례별로 환급 가능/불가 여부가 달라질수 있어 현지 관세 법인이나 로펌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 중국산 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추가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원산지를 판정한 후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는 기본세율(또는 협정세율)과 추가 관세 50%가 부과됩니다. 국내에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원산지는 달라집니다. 6.4일부터 과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상호관세도 부과됩니다.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자재와 제조공정도 등 구비하신 후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원산지 판정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FTA 특혜 원산지 기준과는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나요?

- 美 상무부는 직권으로 또는 업계 요청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4.4일(美 현지시간) 알루미늄 과생제품 목록에 용기에 담은 맥주(美 HS 2203.00.00) 및 비어있는 알루미늄 캔(美 HS 7612.90.10)이 추가되었습니다.
- 또한, 6.16일(美 현지시간) 철강 과생제품 목록에 가전제품 8개 품목군이 추가되었습니다. (6.23일부 시행)
 - (1) 냉장고 (combined refrigerator-freezer) 8418.10.00
 - (2) 건조기 (small and large dryers) 8451.21.00 / 8451.29.00
 - (3) 세탁기 (washing machines) 8450.11.00 / 8450.20.00

- (4) 식기세척기 (dishwashers) 8422.11.00
- (5) 체스트형 직립형 냉장고 (chest and upright freezers) 8418.30.00 / 8418.40.00
- (6) 쿠킹 스토브, 레인지, 오븐 (cooking stoves, ranges, and ovens) 8516.60.40
- (7) 음식물처리기 (food waste disposals) 8509.80.20
- (8) 용접 와이어 랙(welded wire rack) 9403.99.9020

14. 한국에서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반제품으로 생산하여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후 코팅 등 마감 공정하여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원산지는 '한국산' 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코팅 등 단순 공정만 거쳤다면 원산지는 '한국산'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수출 시, 우회 수출로 중국산에 부과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질 변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조공정 중 일부를 국내로 옮기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체별 문제되는 품목, 제조 공정 등 상황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5. 철강 파생제품 수입자가 철강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CBP(美 관세국경보호청) 가이드스에 따라 철강 및 파생제품 모두 조강국(the country of melt and pour) 및 적용가능 코드(applicability code)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철강의 경우, 수입자는 조강국의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코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철강 파생제품의 경우 조강국을 모르는 경우 기타 국가라는 의미의 'OTH'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16.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자가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CBP(美 관세국경보호청) 가이드스에 따라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모두 가장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 및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 및 마지막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과 ISO 코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6.13일(美 동부시간), CBP는 6.28일부로 모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시 제련·주조국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제련·주조국이 미상일 경우에는 200% 고율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새로운 수입신고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필요시, 사후 정정 신고(Post-Summary Correction, PSC) 절차를 통해 제련·주조국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7.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조치 적용시 최소 함량 기준이 있나요? 중량 등 신고 시 1 미만의 단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최소 함량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입자는 관세/가치/중량 신고 시 소수점 이하 두 자리(예: 0.01)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 지침은 'CATAIR - Tariff/Value/Quantity Detail(Input 50-Recor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아 232조 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나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232조 관세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미국 통관 시스템(ACE)은 기본적으로 철강 주조국, 알루미늄 제련·주조국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철강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HTS의 경우, 비철강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주조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는 HTS의 경우, 비알루미늄 원산지 국가를 2차 제련국 및 주조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9.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CBP(美 관세국경보호청)는 수입통관 시 알루미늄 분석 증명서(aluminum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CBP가 수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총액(total price paid or payable)이며, 이는 해당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운송, 보험 및 국제 선적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수료, 경비를 제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한 송장(invoice)에 기반합니다.

21.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대상과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 중 중복되는 품목이 있나요?

- 자동차·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대상 중 총 23개 세번이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美 HS 10단위 기준).
- 중복되는 세번의 경우, 자동차·부품 232조 조치에 근거한 추가 25% 관세만 부과되며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세 부과 기준은 함량 가치가 아닌 대상 품목의 전체 가치입니다.

22.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조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4개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처/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59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02-6000-585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	02-6050-3685

- 그 외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회계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시, 붙임1 법무·회계법인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1

[산업부]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핫라인

-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 법률·회계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 지원

분류	기 관	연락처	이메일	비고
법무 법인	세 중	비공개	section232@shinkim.com	기본 컨설팅 (법률자문) 한정
	화 우	02-6182-8135	jjjahng@yoonyang.com	
회계 법인	안진 (딜로이트)	02-6138-5180	jonshim@deloitte.com	
			yurhong@deloitte.com	
	DKC	010-4851-2780	chanjoolee@dkc-kr.com	
	KPMG	02-2112-0823	wpark@kr.kpmg.com	
	ITC	02-2051-6810	cwjung@theitc.co.kr	
	삼일	02-709-7012	seung-wook.lee@pwc.com	
02-3781-2338			joong-hyun.kim@pwc.com	

* 지원 대상 : 對美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필요 품목)

* 지원 내용 : 기본 컨설팅 + (필요시) 통관 서류 대행

붙임2

(KOTRA) 미국 통상 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



상담내용

관세 · 수입규제 · 인허가 인증 · 현지진출 · 법률 분야 기업 애로 상담

추가 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등 상담 지원
 애로 난이도에 따라 3단계 심층 상담 실시

수출전문위원 상담 → 해외무역관 확인 → 외부 법무 · 관세법인 자문

* 면책조항

관세대응 119 상담 내용은 참고용이며 미국 통상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출 시에는 해당 수입국 바이어나 통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과 수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TRA 및 소속 직원은 제공된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발표 내용 관련, 기업의 손쉬운 확인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 미국 발표 내용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
- 시스템으로 구현이 어려운 문이는 수출전문위원 상담으로 애로 해소



미국 신정부 출범
 통상정책
 정보제공 바로가기



미국 추가 관세
 부과대상 품목 확인
 바로가기

대표전화

1600-7119

(2번[음성상담] > 5번[관세대응 119])

(운영시간: 매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30 제외)

온라인

www.kotra.or.kr (KOTRA 무역투자24)

(상단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24시간 운영

카카오톡

하단 채팅 → 상단 돋보기 아이콘 → KOTRA 검색

→ 채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택 →

당일 운영시간 확인 후 상담원 채팅 옆 '문의' 클릭

붙임3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경제 정보 Dream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해외경제정보드림

QR코드를 찍고
모바일로
방문해보세요!

dream.kotra.or.kr
범정부 수출정보 통합 채널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



해외경제정보

해외진출 관련 국가별, 품목별 전반적 기초정보 제공

국가별정보: 국가정보, 국별경제 정보, 국별 출장자료, 국별 진출전략 등
산업·품목정보: 산업정보, 품목정보, 해외입찰정보, 해외조달동향 등
경제·통상정보: 경제·동향정보, 통상·규제정보,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등



해외수출정보

해외수출에 필요한 단계별 정보

수출기반준비: 수출기반 확립에 필요한 인증정보, FTA정보, 지원사업 정보 등
해외시장개척: 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바이어 조사 정보, 전자상거래 동향 등
계약및통관: 수출 계약 및 통관, 물류 관련 정보
사후관리: 수출 완료 후 외환거래 및 사후관리 정보, 무역분쟁정보 등



해외투자정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단계별 정보

현지조사: 투자를 위한 기본 필요정보, 투자가이드, 실무가이드 등
투자준비: 투자 대상 조사를 위한 국가별 진출현황, 진출전략, 국별환경 등
투자추진: 투자 분석 정보, 진출방식, 외환·금융제도, 법규·서식정보 등
현지경영: 현지 경영을 위한 지원정보, 회계·법인, 국별조세 정보
청산·복귀: 청산 및 복귀를 위한 지원 정보



분석서비스

지능형시를 통한 맞춤형 상세 분석 정보

국별모아드림: 국가 관점의 최신뉴스, 보고서, 인증정보, 산업정보 제공
수출통합보고서: 품목 관점의 수출통합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
지원사업검색: 연계기관에서 제공한 지원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추천
해외투자분석: 해외 유망 투자처에 대한 분석정보제공
수출 MBTI: 수출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콘텐츠 및 사업 추천
수출로드맵챗린지: 수출단계별 필요정보를 미션형태로 제공

붙임4

(KOTRA) 카톡채널 '세계이슈톡톡', '경제통상협력데스크'

KOTRA 세계이슈톡톡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통상이슈들을 모바일로 한눈에 쉽고 빠르게!

카카오톡에서 Ch+ **KOTRA 세계이슈톡톡** 을 추가하고 지금 꼭 알아야 할 글로벌 통상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주요국 최신 통상 정보

- 미국(워싱턴)
- EU(브뤼셀)
- 일본(도쿄)
- 중국(베이징)

QR코드를 스캔해서 Ch+ 등록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경제협력데스크(미국 워싱턴, EU 브뤼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협상의 시간, 협력의 해법!
KOTRA 경제통상협력데스크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정보채널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데스크
트럼프 2기 통상정책, 관세조치 등

브뤼셀 데스크
공급망실사지원(CSDOO), 한·소·국경조장제도(CDAM), 혁신성장지원(CRIM) 등

중국 베이징 데스크
미국발 통상대응, 대미·중·일 협조, 공급망 다변화 강화

일본 도쿄 데스크
미국 신정부 정책 대응, GX 추진전략, 글로벌사우스 협력

우리나라 산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국의 경제·통상 정보를 현장에서 발빠르게 수집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합니다.

KOTRA 경제통상협력데스크 문의처

국내 통상협력팀 02-3460-7515 mikim@kotra.or.kr	해외 미국 워싱턴 데스크 dca_ktc@kotra.or.kr / +1-202-857-7919(ex.102)
	EU 브뤼셀 데스크 ji1.yoo20@kotra.or.kr / +32-2-205-0085
	중국 베이징 데스크 heehyun@kotra.or.kr / +86-10-6410-6162(ex.19)
	일본 도쿄 데스크 presentkim@kotra.or.kr / +81-3-3214-6921

기획 영상, 뉴스레터, 경제통상리포트, 심층보고서

. 끝 .